

	역량기반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규정 <small>[제목개정 2020. 8.10]</small>	제정일	2014. 5. 1
		개정일	2023. 1. 1
		개정차수	7차
		담당부서	학사운영과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반영하고 사회변화 및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0. 8.10)

제 1조의 2(용어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역량이라 함은 직무역량과 대학핵심역량을 말한다.
- ② “교육과정”이라 함은 학습자의 전공과 교양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목표 및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, 이를 평가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계획을 말한다. (개정 2023. 1. 1)
- ③ “교육과정 편성”이라 함은 학과 단위의 교육과정을 개발, 개편,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④ “교육과정 개발”은 새로운 전공의 신설 등으로 교육과정을 신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⑤ “교육과정 개편”은 산업 및 사회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⑥ “교육과정 변경”이라 함은 전체 이수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교과목의 과목명 변경, 학점조정, 개설학기 변경, 추가, 삭제 등을 말한다.

[본조신설 2020. 8.10]

제 2조 (교육과정개발 및 개편) ①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은 학부(과)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「역량기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」에 의거 학부(과) 교육과정개발위원회에서 개발, 편성하고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거쳐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총장이 확정한다. (개정 2018.10. 1, 2020. 8.10)

- ② 학부(과)는 전임교원 외에 지역사회 산업체 실무전문가가 참여한 학부(과)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 산업혁명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을 정한다. (개정 2018.10. 1, 2020. 8.10)
- ③ 교육과정 확정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과목명 변경, 학기 변경 등을 수정할 때에는 교육과정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한다. (개정 2023. 1. 1)
- ④ 역량기반 교육과정 편성은 개발, 개편, 변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. (개정 2015. 2. 1, 2020. 8.10)
- ⑤ 교육과정 개발주기는 2년제 학과의 경우 2년마다, 3년제 학과의 경우 3년을 주기로 개발하여 대내외의 상황에 따라 그 주기는 변동될 수 있다. (개정 2015. 2. 1)

제 3조 (교육과정 편성)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역량과 연계하여 편성한다. (개정 2020. 8.10)

- ② 교양교육과정은 직업기초능력 및 일반교양으로 편성한다. (개정 2020. 8.10)
- ③ 교육과정 편성시수는 이론과 실습으로 구분한다. (개정 2020. 8.10, 2023. 1. 1)
- ④ 교양교육과정은 직업기초능력과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윤리관 확립을 통한 직업기초직무를

성취할 수 있도록 역량기반 교과목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20. 8.10)

⑤ 전공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표를 수행하고 국가의 산업동향과 지역의 산업체 요구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전공의 핵심 직무를 성취할 수 있도록 현장실무 및 역량 기반 또는 그에 준하는 교과목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20. 8.10)

⑥ 교직과목은 관련 법 및 시행령,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구성한다.

⑦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각 학과별 직무 능력을 달성할 수 있는 이수체계에 맞춰 편성되어야 하며, 대학의 핵심역량과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한다. (개정 2020. 8.10)

⑧ 교육과정은 기초학습능력 및 직업기초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양교과목, 현장실무능력 및 전공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전공교과목 및 교직과목으로 편성한다.

⑨ 기타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역량기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」에 따른다. (개정 2020. 8.10)

[전문개정 2018.10. 1]

제 4조 (직업기초 및 기초학습능력 지원) 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인성과 교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양과목, 전공교과목을 지원하고 운영할 수 있다.

② (삭제 2018.10. 1)

제 5조 (교육과정개발위원회) ① 학부(과)는 본교의 교육목표 및 직업교육과 산업체 요구가 반영된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둔다. (개정 2020. 8.10)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학부(과)장이 되며, 교육과정 개발 책임자는 학과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. 위원은 학과 전임교원 및 산업체 실무전문가로 하며, 산업체 실무전문가의 구성비를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. (개정 2020. 8.10, 2023. 1. 1)

④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평가와 개선이며, 기타 학부(과)의 교육과정에 관한 제반사항에 참여할 수 있다. (개정 2020. 8.10)

⑤ 위원회는 의견을 수합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최종 교육과정표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.

제 6조 (삭제 2015.10. 1)

제 7조 (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) ①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학부(과)별로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을 반영한 「학부(과) 자체평가 및 CQI 결과보고서」를 제출한다. (개정 2020. 8.10)

② 「학부(과) 자체평가 및 CQI 결과보고서」를 통해 전체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와 부합되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반영한다. (개정 2020. 8.10)

③ 역량기반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는 교육혁신지원센터에서 관리한다. (개정 2019.11. 1, 2020. 8.10)

④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시 구성원(산업체 실무전문가, 교원 및 학생대표)의 개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수렴된 내용을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. (개정 2020. 8.10)

[전문개정 2018.10. 1]

제 8조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.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